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69
----------	-------

발의연월일 : 2026. 6. 19.

발 의 자 : 곽상언 · 권향엽 · 김남근
진성준 · 김 윤 · 허성무
황정아 · 오세희 · 송재봉
이광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84조제1항은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장애인복지실시기관(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장애인복지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84조는 제3항에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만을 두고 있을 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부과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즉, 「장애인복지법」 제84조의 규정만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84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84조제5항 신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4조(이의신청) ① ~ ④ (생략) <u><신 설></u></p>	<p>제84조(이의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이 용할 수 있는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u></p>